

1. 개정이유

「물관리기본법」 제정·시행('19.6월)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, 현행 운영체계 등을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시행규칙 및 서식 신설(안 제6조제2항, 제3항)

- 1)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출석일시 변경신청, 변경결과 통지를 서식에 따라 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나. 별지 서식 변경(안 별지 서식 7, 8, 12호)

- 1) 기존의 별지 7, 8, 12호 서식에서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위원장 및 3명의 위원만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위원회 운영에 부합하도록 서명 날인란을 관인으로 변경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해당사항 없음

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영 제20조제2항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”이란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서를 말한다.

③ 영 제20조제3항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”이란 별지 제10호의3 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 통지서를 말한다.

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○○물관리위원회 조 정 조 서	
사 건	○○○○ 물분쟁 조정신청사건
신 청 인	성명(명칭)
	주소
피신청인	성명(명칭)
	주소
신청의 취지 및 이유	
조정 내용	
「물관리기본법」 제3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. 년 월 일 ○○물관리위원회 관인 신청인 피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(서명 또는 인)	

○○물관리위원회 조정절차 종료 의결서	
사 건	○○○○ 물분쟁 조정신청사건
신 청 인	
피신청인	
의결내용	
신청취지	
이 유	
기 타	
「물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. 년 월 일 ○○물관리위원회 관인 (전화번호:) 귀하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자료제출·출석의 요구)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6조(자료제출·출석의 요구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영 제20조제2항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”이란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서를 말한다. ③ 영 제20조제3항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”이란 별지 제10호의3 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 통지서를 말한다.